

입 법 예 고

동 물 보 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
(동물보호과)

1. 개정이유

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관련 현장 애로사항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,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표시 방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,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대상 확대(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, 제4항 신설)

- 제품 특성상 수분 또는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% 미만인 축산물가공품이라도,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함

나.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의 명확화(안 별표9의2 개정)

- 인증에 필요한 교육 이수 대상에 농업법인을 포함하고 교육 이수 기간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한편, 사육시설을 갖추고 사육시설에 따른 사육밀도, 사육환경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,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
-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주요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하여 인증기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

다.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합리화(안 별표9의5 개정)

-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

인증농장정보의 큐알(QR)코드 등을 통한 대체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,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증농장정보(농장명, 가축의 종류, 소재지)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7제2항 단서 중 “축산물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”을 “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
2. 제품의 특성상 수분 함량 및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, 제품에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
-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별표 9의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(중전의 나목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

(종전의 다목) 중 “농업인 또는 나목의 관리자는 검역본부장”을 “농업인, 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 단서 중 “검역본부장”을 각각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4호나목2)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)나) 단서 중 “검역본부장”을 각각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한다.

가. 농업인(농업법인을 포함한다)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할 것. 다만,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둘 것

2. 시설기준

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육시설을 갖추고 그 사육시설에 따른 사육밀도, 사육환경 등의 기준을 준수할 것

나.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외에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의 표시를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

바. 입식·출하 거래내역, 폐사체 관리, 사료 섭취량, 가축의 건강상태 점검, 질병관리, 청소·소독 내용 등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

별표 9의5 제1호가목 중 “포장지”를 “포장지·용기(이하 “포장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 전단 중 “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한 경우로서 축

산물가공품포장지”를 “동물복지축산물을 생산한 경우로서 포장재”로, “포장지에 표시하기”를 “포장재에 표시하기”로, “포장지에 표시하고”를 “포장재에 표시하고”로, “포장지의”를 “포장재의”로 하며, 같은 1) 후단 중 “포장지”를 “포장재”로, “포장지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개수 및”을 “포장재에”로 하고, 같은 목 2) 본문 중 “식육가공품”을 “축산물가공품”으로, “포장지”를 “나목1)에 따른 홈페이지, 큐알(QR)코드 등을 활용하여 제품에 사용된 전체 인증농장정보를 제공하거나, 포장재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다. 다만, 생략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에 사용한 인증농장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(로트)별로 기록·유지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2)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목에 3) 및 4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 인증농장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중복되는 인증농장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농장정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생략된 인증농장정보의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.

4) 동물복지축산물을 판매할 때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등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판 또는 푯말에 다음의 예시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.

※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(예시) : 표시도형, 인증농장정보 및 정보

확인 방법을 기록한다. 다만, 표시도형 및 글자 크기는 표지판 또는
 폼말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		
 인 증 번 호	인증 농장명/농장주	○○농장/홍길동
	인증번호	동물복지-10-01-1-*
	품목(가축의 종류, 추가인증사항)	계란(산란계,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)
	농장 소재지	경기도 수원시
* 위의 농장을 포함 전체 인증농장정보 세부내역은 큐알(QR) 확인하세 요		

별표 9의5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타목 중
 “동물복지축산물 표시”를 “‘동물복지’ 등의 표시”로, “함께 표시”를 “표시”
 로, “표시한다”를 “표시하되, 동물복지 표시 글자는 표시 도형 없이 단독으
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하며, 같은 표 비고 제1호 전단 중 “검역본
 부장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, “준수하는”을 “준수하고 인증받은”으
 로 한다.

다. 제36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동물복지 표시 도형 및 글자를 사용
 하려는 경우에는 제품 가공에 사용된 모든 축산물 유래 원료(해당
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추출·농축하거나 이에 다른 원료를 가하여
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)는 그 원료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1)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
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일 것

2) 식육 및 식육을 원료로 한 가공원료의 경우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동물복지 도축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일 것. 다만, 원유·식용란 및 원유·식용란을 원료로 한 가공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호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7(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) ① (생 략)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5와 같다. 다만,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<u>축산물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</u>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.	제36조의7(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다만,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<u>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</u>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.
1.2. <신 설>	1. <u>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</u> 2. <u>제품의 특성상 수분 함량 및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, 제품에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</u>
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</u>	③ <u>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</u>

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.

④ <신 설>

[별표 9의2] 동물복지축산농장
인증기준

1. 인력기준

- 가.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할 것
- 나.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둘 것
- 다. 가목의 농업인 또는 나목의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지정·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(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)을 4시간 이상 받았을 것

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.

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

[별표 9의2] 동물복지축산농장
인증기준

1. 인력기준

- 가. 농업인(농업법인을 포함한다)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할 것. 다만, 농업인이 해당 농장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복지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둘 것
- 나. 가목의 농업인, 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거나 지정·고시한 교육전문기관에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(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)을 4시간 이상 받았을 것

2. 시설기준 가. <신 설> 나. (생 략) 3. 사육 및 관리기준 가.~마. (생 략) 바. <신 설> [별표 9의5]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1. 표시 방법 가.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<u>포장지</u>에 표시한다. 나. (생략) 1)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 을 원료로 하여 <u>축산물가공품을</u> <u>제조한</u> 경우로서 <u>축산물가공품포장</u> <u>지</u>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 지축산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<u>포장</u> <u>지</u>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: 여러 농장 중 일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 를 <u>포장지</u>에 표시하고 나머지 농장	2. 시설기준 가.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</u> <u>시하는 사육시설을 갖추고 그 사육</u> <u>시설에 따른 사육밀도, 사육환경 등</u> <u>의 기준을 준수할 것</u> 나. (현행과 같음) 3. 사육 및 관리기준 가.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<u>입식·출하 거래내역, 폐사체 관</u> <u>리, 사료 섭취량, 가축의 건강상태</u> <u>점검, 질병관리, 청소·소독 내용 등</u> <u>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</u> <u>고 2년 이상 보관할 것</u> [별표 9의5]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1. 표시 방법 가.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<u>포장지·용기(이하 “포장재”라 한다)</u> <u>에 표시한다.</u> 나. (생략) 1)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 을 원료로 하여 <u>동물복지축산물을</u> <u>생산한</u> 경우로서 <u>포장재</u> 협소 등으 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지축산농장 의 인증농장정보를 <u>포장재</u>에 표시 하기 어려운 경우: 여러 농장 중 일 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<u>포장재</u> <u>에</u> 표시하고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
--	---

의 인증농장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지의 다른 표시면 또는 홈페이지,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홈페이지, QR코드 등 포장지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제공하려면 포장지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개수 및 인증농장정보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.

2)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혼합 또는 분쇄하여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으로서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: 포장지에 인증농장정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제품에 사용한 인증농장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(로트) 별로 기록·유지해야 한다.

3) <신 설>

장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재의 다른 표시면 또는 홈페이지, 큐알(QR)코드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홈페이지, 큐알(QR)코드 등 포장재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제공하려면 포장재에 인증농장정보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.

2)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혼합 또는 분쇄하여 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으로서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: 나목1)에 따른 홈페이지, 큐알(QR)코드 등을 활용하여 제품에 사용된 전체 인증농장정보를 표시하거나, 포장재에 인증농장정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생략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에 사용한 인증농장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(로트)별로 기록·유지해야 한다.
3) 인증농장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축산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

4) <신 설>

리법」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중복되는 인증농장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농장정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생략된 인증농장정보의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.

4) 동물복지축산물을 판매할 때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등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판 또는 푯말에 다음의 예시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.

※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(예시) :

표시도형, 인증농장정보 및 정보 확인 방법을 기록한다. 다만, 표시도형 및 글자 크기는 표지판 또는 푯말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		
	인증 농장명/농장주	○○농장/홍길동
	인증번호	동물복지-10-01-1-*
	품목(가축의 종류, 추가인증사항)	계란(산란계,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)
	농장 소재지	경기도 수원시
* 위의 농장을 포함한 전체 인증농장정보는 큐알(QR)을 확인하세요		

다. 제36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동물복지 표시 도형 및 글자를 사용

다. <신 설>

	하려는 경우에는 제품 가공에 사용된 모든 축산물 유래 원료(해당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추출·농축하거나 이에 다른 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)는 그 원료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1)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일 것 2) 식육 및 식육을 원료로 한 가공 원료의 경우 「동물보호법」 제62조에 따른 동물복지 도축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일 것. 다만, 원유·식용란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표시 기준	2. 표시 기준
가.~카. (생략)	가.~카. (현행과 같음)
타. 표시 도형과 함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, 표시글자는 동물복지, 동물복지축산, 동물복지축산물, 동물복지○○, 동물복지축산○○ 또는 동물복지사육 ○○으로 표시한다.	타. 표시 도형과 함께 '동물복지' 등의 표시 글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, 표시글자는 동물복지, 동물복지축산, 동물복지축산물, 동물복지○○, 동물복지축산○○ 또는 동물복지사육 ○○으로 표시하되, 동물복지 표시 글자는 표시 도형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비고	비고
1.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때 별	1.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때 별

표 9의2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 해당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,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·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.

2.~3. (생 략)

표 9의2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 해당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,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·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.

2.~3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632